

양성평등의 기준: 통치제도와 문화편향의 차이*

박종민**·배정현***

본 논문은 양성평등과 관련한 사법판결과 입법을 둘러싼 정책논쟁에서 사용되는 평등의 관념과 기준이 무엇이며 통치제도 및 문화편향에 따라 양성평등을 정당화하는 논거가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 살펴본다. 분석결과 비정치적인 사법기관은 개인대상단순평등, 절대평등, 절차의 기준에 기초한 평등의 관념을 옹호하나 정치적인 입법 및 행정기관은 블록대상평등, 보상적 불평등을 통한 전체평등, 필요의 기준에 기초한 평등의 관념을 옹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떤 문화편향을 지지하는가에 따라 양성평등 관련 정책쟁점에 대한 선호가 달랐는데 계층주의자들은 귀속의 기준에 기초한 평등, 부문평등을 옹호하고, 평등주의자들은 블록대상평등, 보상적 불평등을 통한 전체평등을 지지하며, 개인주의자들은 개인대상단순평등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분석결과는 양성평등의 관념과 기준이 다차원적이며 통치제도 및 문화편향에 따라 강조되는 평등의 논거가 상이함을 보여준다.

주제어: 양성평등, 개인주의, 계층주의, 평등주의

I. 머리말

건국 후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사회에서는 유교전통과 문화의 유산으로 양성

* 본 논문은 2006년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원고의 수정본이다. 논문을 수정하는데 도움을 준 고려대 김희강 교수, 아주대 김서용 교수와 왕재선 박사 및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감사한다. 끝으로 자료 수집에 도움을 준 박연선 연구조교에게도 감사한다.

** 미국 캘리포니아(버클리)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행정이론이다(cmpark@korea.ac.kr).

*** 현재 고려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주요 관심분야는 정책이론이다(baejh@korea.ac.kr).

평등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법제도의 발전이 더디었다. 1948년 제헌헌법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평등의 원칙을 천명하였다. 법 앞의 평등뿐만 아니라 성에 의한 차별 금지, 여성 참정권의 인정 등 형식적 평등을 명시한 것이다. 이러한 헌법정신에 따라 평등을 보장하는 다양한 입법이 추진되었으나 양성평등의 이상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법제화는 제한적이었다(조형, 1996). 따라서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의 영향력이 증대되면서 양성평등이 한국 사회에서 주요한 사법 및 입법쟁점의 하나가 된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한국여성정책연구회, 2002). 新사회운동의 한 축을 구성하는 각종 여성단체들은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및 정치적 지위의 향상을 위해 가족관계, 고용시장, 교육제도, 정치사회 등 삶의 영역 전반에서 성차별 철폐를 위한 사법소송을 제기하고 양성평등을 구현하는 입법과 정책을 요구하였다(김경희, 2005). 이에 따라 고용시장에서 성차별의 해소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었고 잠정적 우대조치인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가 도입되었으며 제대군인가산점제도가 위헌판결로 폐지되었다. 또한 성차별의 대표적 상징이라고 간주된 부성(父姓)주의 호주제가 위헌판결로 폐지되고 여성의 중중회원 자격이 대법원 판결로 인정되었다. 또한 정치사회에서 여성참여의 확대를 위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등 공직선거후보 여성할당제가 도입되었다.¹⁾

그러나 이러한 양성평등을 위한 사법소송과 입법정책은 가부장적 유교문화와 전통이 잔존하는 남성 지배적 한국 사회에서 침예한 정책논쟁을 불러 일으켰다(전희권, 2002). 논쟁 당사자들은 헌법에 명시된 평등의 이상을 지지하면서도 상이한 평등의 관념과 기준을 사용해 자신들의 입장을 정당화하였다. 일부가 기회의 평등을 강조하면 다른 일부는 결과의 평등을 옹호하였다. 또 어떤 이들이 단순평등을 논거로 삼으면 다른 사람들은 필요의 기준에 따른 평등을 옹호하였고 또 다른 이들은 귀속의 기준에 따른 평등을 주장하였다. 이처럼 양성평등을 둘러싼 정책논쟁에서 사용되는 평등의 관념과 기준은 하나가 아니다.

1) 이러한 법제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양성평등의 현실은 선진국과 비교해 여전히 낙후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2006년 젠더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평등지표점수(0=불평등, 1=평등)는 0.616점으로 조사대상 115개 국가들 가운데 92번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부지표를 보면 고등교육기회 및 출산성비에서의 젠더격차도 크지만 동일노동 동일임금 및 국회의원직과 장관직 여성비율에서의 젠더격차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Hausmann, Tyson & Zahidi, 2006).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사법판결과 입법정책에서 옹호되는 평등의 관념과 기준이 어떻게 다르며 양성평등 관련 정책쟁점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가 문화편향에 따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주려고 한다. 본 논문은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개념적 차원에서 평등의 관념과 기준의 다양성을 논한다. 둘째, 양성평등 관련 사법판결과 입법정책이 강조하는 평등의 관념과 기준을 분석한다. 셋째, 문화편향에 따른 양성평등 관련 쟁점에 대한 선호의 차이를 분석한다. 끝으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양성평등 관련 사법 및 입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책논쟁의 역동성에 대한 함의를 제시한다.

II. 평등의 관념과 기준

양성평등 관련 사법판결과 입법정책에 대한 입장을 정당화하는데 사용되는 평등의 관념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성의 범주를 구분하지 않고 개인에 초점을 둔 평등의 관념이고 둘째는 성의 범주를 구분하면서 개인보다 범주에 초점을 둔 평등의 관념이다(Young, 2001). 전자는 개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지 않고 개인과 개인 간의 평등을 강조한다면 후자는 개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고 범주와 범주 간의 평등을 강조한다. 성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가 동일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거나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주장은 개인 간의 평등을 강조하는 것이다. 호주제 폐지나 제대군인가산점제도 폐지 등은 젠더 중립적인 개인 간 기회의 평등을 옹호하는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성을 구분하여 여성에게 기회나 권리를 더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은 범주 간의 평등을 강조하는 것이다.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나 공직선거후보여성할당제는 젠더 범주에 따른 결과의 평등을 강조하는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양성평등을 위한 사법판결과 정부정책은 이처럼 개인 간 평등에 초점을 두는 것과 범주 간 평등에 초점을 두는 것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양성평등의 목표는 외관상 동일하나 정당화하는 평등의 관념과 기준이 서로 다른 것이다. 따라서 양성평등 관련 사법 및 입법논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논쟁당사자들이 사용하는 평등의 관념과 기준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등의 의미는 민주주의나 자유의 의미처럼 다양하다(Walzer, 1983). 평등관에 대한 경험연구를 수행한 Verba & Orren(1985)은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 집단 평등과 개인평등, 경제적 평등과 정치적 평등, 이상으로서의 평등과 현실로서의 평등 등 다양한 평등의 관념을 구분하고 있다. 평등의 다원성에 대한 추상적 분석을 시도한 Rae(1981, 20-44)는 평등의 주체(subjects of equality)와 평등의 영역(domains of equality)에 따라 평등의 관념이 다르다고 하였다. 평등의 주체는 누구를 위한 평등인가의 차원이다. 이와 관련해 그는 평등을 5개 유형으로 구분하면서 그 가운데 근본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3개 유형을 강조하고 있다.²⁾ 첫째, 개인대상 단순평등(simple individual-regarding equality)은 범주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개인들에 대한 평등을 주장한다. 둘째, 블록대상평등(block-regarding equality)은 범주를 구분하고 범주(블록)간 평등을 주장한다. 여기서는 동일 범주에 속하는 개인들 간의 불평등에는 관심이 없다. 셋째, 부문평등(segmental equality)은 범주를 구분하고 각 범주에 속하는 개인들 간의 평등을 주장한다. 여기서는 범주들 간의 불평등에는 관심이 없다. 범주의 수를 보면 개인대상단순평등의 경우 1개이나 부문평등과 블록대상평등의 경우 2개 이상이다. 평등이 요구되는 대상이 범주 내인가 혹은 범주 간인가를 보면 개인대상단순평등과 부문평등의 경우에는 범주 내이고, 블록대상평등의 경우에는 범주 간이다.

한편, 평등의 영역은 무엇을 평등하게 할 것인가의 차원이다. Rae(1981, 45-63)는 평등영역의 범위에 따라 협소한 평등과 광범한 평등을 구분한다. 보다 유용한 것은 그가 제시한 또 다른 구분이다. 그는 여기서 평등의 요구에 대응하여 (현재) 분배대상이 될 수 있는 배분영역(domains of allocation)과 분배대상이 되어야 하는 고려영역(domains of account)을 구분한 후 배분영역과 일치하는 고려영역의 균등분배인 직접평등(straightforward equality), 배분영역만의 균등분배인 한계평등(marginal equality), 배분영역의 불균등 분배를 통해 배분영역 밖의 불평등을 상쇄시키는 보상불평등(compensatory inequality), 그리고 배분영역의 확대 혹은 고려영역의 축소로 직접평등을 촉진하는 영역재분배(redistribution of domains)를 구분하고 있다. 보상불평등과 영역재분배는 전체평등(global equality)을 촉진하는 것이다.

2) 다른 2개 유형은 포괄적(inclusionary) 평등과 배타적(exclusive) 평등이다. 둘 다 상대적 평등을 반영하는데 X가 Y의 평등범주보다 더 넓으면 포괄적이고 더 좁으면 배타적이다.

평등의 관념은 자원배분의 공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Hochschild(1981)는 자원배분의 공정성의 기준으로 절대평등(strict equality), 필요(need), 투자(investment), 산출(results), 귀속(ascription) 및 절차(procedure)를 제시하고 있다. 절차를 제외하고 절대평등과 필요의 기준은 평등의 원리를, 귀속과 산출(기여)의 기준은 차별의 원리를, 그리고 투자의 기준은 양 원리를 모두 반영한다. 첫째, 절대평등의 기준에 따르면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은 분배되는 자원에 대해 동일한 양을 받아야 하며 이는 객관적 평등을 가리킨다. 동일한 법적 권리가 모든 시민에게 부여되어야 한다는 입장은 이러한 원리에 기초하여 혜택과 부담을 똑같이 배분하는 규칙을 공정한 것으로 본다. 둘째, 필요의 기준에 따르면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의 필요는 동등하게 만족되어야 하며 이는 주관적 평등을 가리킨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이 필요의 기준에 의한 배분을 공정한 것으로 본다. 셋째, 투자의 기준에 따르면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은 공동체에 투자한 것에 비례해서 보상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교육이나 훈련의 투자에 상응하여 소득의 차이가 나는 것은 공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넷째, 산출(기여)의 기준에 따르면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은 생산성 혹은 사회적 기여에 비례해서 보상을 받아야 한다. 이는 전술한 투자의 기준과 달리 결과(산출)에 직접 기여한 정도에 상응하는 보상을 공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섯째, 귀속의 기준에 따르면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은 유관한 귀속적 특성, 즉 성, 연령, 종교 등에 따라 보상을 받아야 공정하다고 본다. 여섯째, 절차의 기준에 따르면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은 특정한 과정의 결과에 따라 보상을 받아야 공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평등의 관념과 기준은 이처럼 다양하고 복잡하다. 이들 가운데 일부 평등의 관념과 기준은 양성평등 관련 사법판결과 입법정책을 정당화하거나 이를 반박하는 논거에서 종종 발견된다. 예들 들면 성의 구분 없이 개인들 간 기회의 평등을 강조하는 입장은 개인대상단순평등, 절대평등, 절차의 기준에 기초한 평등의 관념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여성이기 때문에 특별우대조치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양성 간 불평등을 시정하려는 입장은 블록대상평등, 보상적 불평등을 통한 전체평등, 필요의 기준에 기초한 평등의 관념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에 따라 서로 다르게 대우해야 한다는 입장은 부문평등, 귀속의 기준에 따른 평등의 관념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양성평등 관련 사법

판결과 입법정책은 다양한 평등의 관념과 기준을 강조한다. 평등은 자유나 민주주의처럼 바람직한 가치이나 논쟁 당사자들은 서로 다른 해석과 의미를 부여하면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평등이 진정한 평등이고 정당한 평등임을 보이려고 각축하고 있는 것이다.

Ⅲ. 통치제도와 평등의 기준

여기서는 최근 양성평등 관련 주요 통치제도의 의사결정, 즉 사법기관의 판결과 입법 및 행정기관의 정책을 기술하고 사법판결과 입법정책에서 어떤 평등의 관념과 기준이 강조되고 옹호되었는지 살펴본다.

1. 사법기관

첫째, 1999년 헌법재판소는 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 등에 응시할 때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퍼센트를 가산하는 제대군인가산점제가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³⁾ 가산점제로 인해 여성과 신체장애자 등의 평등권이 침해된다는 것이다. 국가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에게 보상조치를 취하거나 특혜를 부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가산점제는 제대군인에게 일종의 적극적 보상조치를 내리는 제도로 헌법상의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⁴⁾ 전체 여성 중 극히 일부만이 제대군인에 해당될 수 있지만 남자의 대부분은 제대군인에 해당하므로 가산점제는 실질적으로 성별에 의한 차별이며 더 나아가 신체 건강한 남자와 그렇지 못한 남자도 차별한다고 보았다. 헌법이 근로 혹은 고용의 영역에서 특별히 남녀평등을

3) 헌법재판소 1999.12.23. 98헌마363 전원재판부.

4) 최근 제대군인가산점제 부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군복무 2년간 여자들은 취업공부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군필자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부활 반대자들은 여성이 자기 선택으로 군에 안 가는 것도 아니며 가산점제는 원칙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반박한다. 반면 교육인적자원부가 도입하려는 생리공결제(여학생이 생리통으로 등교하지 못하면 출석을 인정하고 시험을 치르지 못하면 직전 시험 성적을 인정해 주는 제도)에 대해 찬성자들은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고통만큼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반대자들은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반박한다.

요구하고 있는데 가산점제는 이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헌법의 공무담임권 조항은 모든 국민이 누구나 그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데 가산점제는 공직자선발의 능력주의를 제한하여 여성과 장애인의 공무담임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것이다. 제대군인에 대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더라도 사회의 다른 집단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할 균등한 기회 자체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가산점제는 제대군인에 대한 특별한 대우로 오히려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였다고 보았다. 그리고 가산점제는 차별취급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입법목적에 비하여 차별로 인한 불평등의 결과가 심각하므로 차별취급의 비례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하였다. 위헌판결의 주요 논거는 제대군인을 위한 블록대상평등, 부문평등을 배척하고 개인대상단순평등, 절대평등, 절차의 기준을 강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둘째, 2005년 대법원은 종종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만으로 제한하는 종래의 관습법의 효력에 대해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종 구성원이 된다면서 여성의 종종 회원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다.⁵⁾ 대법원은 판결의 논거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보장하는 헌법규범을 언급하였다.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등 종종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생득적으로 결정되는 특성에 의해 박탈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해 별개의견은 종종에 있어서 양성평등의 원리를 적용하는 범위와 한계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였다. 남녀평등의 원칙을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기계적 평등이며 성년 여자가 종종 가입 의사를 표명한 경우 그 성년 여자가 당해 종종 시조의 후손이 아니라는 등 그 가입을 거부할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이상 가입의사를 표명함으로써 종종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다수의견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종종 회원이 되는 점이 성년 남자에게는 문제될 것이 없고 성년 여자에게만 문제가 되는지 납득하기 어렵고 성별에 의하여 종종 회원 자격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정당성과 합리성이 없다고 반박하였다. 다수의견은 성을 구분하는 부문평등을 거부하고 개인대상단순평등, 절대평등을 옹호한 것이다. 반면 별개의견은 종종의 목적과 기능에 비추어 평등원칙을 남자와 여자에 달리하여 적용해야 하며 성인남자의 경우

5) 대법원 2005.7.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당연히 회원이 되나 성인여자의 경우 그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부문평등, 귀속의 기준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2005년 헌법재판소는 호주제에 대해 이는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이며 호주승계 순위, 혼인 시 신분관계 형성, 자녀의 신분관계 형성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하는 제도로 위헌판결을 내렸다.⁶⁾ 호주제는 당사자의 의사나 복리와 무관하게 부계혈통 중심의 가(家)의 유지와 계승이라는 관념에 뿌리박힌 특정한 가족관계의 형태를 일방적으로 규정하고 강요함으로써 개인의 존엄성 및 개인과 가족의 자율적 결정권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가족관계를 호주와 그에 복속하는 가족으로 분리시켜 가족 구성원 모두를 인격을 가진 개인으로서 성별을 떠나 평등하게 존중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해 반대의견은 가족법의 영역에서 도식적인 평등의 잣대로 우리의 전통문화를 자의적으로 재단함으로써 전통가족문화가 송두리째 부정되고 해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서는 곤란하고, 처의 부가입적 원칙, 자의 부가입적 원칙,⁷⁾ 호주승계제도는 여성에 대한 실질적인 차별이라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며 임의분가, 호주승계권리 포기 등의 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존엄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여기서도 다수의견의 논거는 개인대상단순평등, 절대평등을 옹호한 반면 반대의견의 논거는 주로 부문평등, 귀속의 기준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전술한 세 사례는 최근 사법기관이 양성평등과 관련해 내린 판결 모두는 아니지만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헌법이 규정한 개인의 존엄성에 기초한 양성평등의 원리를 옹호하여 평등 원칙의 적용 주체를 개인에 두고 있다. 이들 사법판결은 주로 젠더 범주를 고려한 불록대상평등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개인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젠더 중립적인 개인대상단순평등, 절대평등을 강조한 것이고 기회의 평등, 권리의 평등, 법 앞의 평등 등 형식적 평등을 옹호한 것이라 할 수 있다(조주현, 2003).

6) 헌법재판소 2005.2.3 선고 2001헌가9,10,11,12,13,14,15,2004헌가5(병합) 전원재판부.

7) 또 다른 별개의견은 자의 부가입적 원칙의 경우는 자의 의사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모(母)를 실질적으로 차별하므로 개인의 존엄과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였다.

2. 입법 및 행정기관

첫째, 여성발전기본법의 ‘잠정적 우대조치’ 규정에 따라 한시적인 여성채용목표제의 실시 근거가 1995년 공무원임용시행령에 마련되고 1996년부터 2002년까지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가 시행되었다. 이 정책은 여성에 대한 집단적 차별과 불이익 및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분리를 적극적으로 해소함으로써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구현하려는 여성우대조치 또는 남녀차별조치라 할 수 있다.⁸⁾ 이는 노동시장에서의 양성불평등은 구조적 및 역사적 차별의 결과이며 양성평등의 실현을 여성 개개인이 부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 토대를 둔다. 여성이 개별적인 노력을 통해 채용, 승진 및 기타의 근로조건에서 평등한 지위를 이루기 어려운 상황에서 여성에 대한 특별대우를 통해 양성평등을 구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는 개인 간 평등을 이루는 것보다 범주 간 평등을 이루는 것을 강조한다. 여성 공무원 비율을 높이기 위해 지원자의 성을 구분하고 성 범주에 기초해 보상적 차별대우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성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를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제대군인가산점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논리와 반대되는 것이다(오병선, 2001).⁹⁾ 이 정책은 개별 여성 간의 불평등 문제보다는 범주로서의 여성과 남성 간 평등을 강조하기 때문에 개인대상단순평등이나 산출(기여)의 기준에 기초한 평등의 관념보다 블록대상평등, 필요의 기준에 기초한 평등, 보상적 불평등을 통한 전체평등을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최근 여성 정치인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공직선거후보 여성할당제가 실시되고 있다. 2000년 정당법은 정당의 국회의원 및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자의 30 퍼센트를 여성 후보자로 공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2002년에는 정당의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자의 50 퍼센트를 여성으로 공천하도록 의무화하여 할당 비율을 높였으며 정당의 광역의원 지역대표 후보자의 30 퍼센트를 여성으로 공천하도록 권고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2004년에는 정당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의 50 퍼센트를 여성으로 공천하도록 의무화하여 할당 비율을 높였

8)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는 명칭이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바뀌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되었다.

9) 제대군인가산점제에 대한 위헌판결이 내려지면서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가 제대군인가산점제와 성격이 다르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으며, 정당의 국회의원 지역대표의 30 퍼센트를 여성으로 공천하도록 권고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2005년에는 정당의 국회의원, 광역의원,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자의 50 퍼센트를 여성으로 그리고 홀수 번을 여성으로 공천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들 입법은 여성에 대한 특별대우를 통해 여성의 선출공직 진출을 유도하여 정치사회에서의 양성평등을 이루려는 노력의 일환이다.¹⁰⁾ 이 입법정책 역시 개인대상단순평등이나 산출(기여) 혹은 절차의 기준에 기초한 평등보다 블록대상평등, 필요의 기준에 기초한 평등, 보상적 불평등을 통한 전체평등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전술한 두 사례는 정치사회의 양성평등을 위한 대표적인 입법정책이다. 이들 입법정책은 젠더 특정한 대우를 강조하여 평등 원리의 적용 주체를 개인보다는 범주에 두고 있다. 즉, 이들은 개인대상단순평등이 아니라 블록대상평등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개인 간의 기회의 평등 혹은 권리의 평등보다 젠더 집단 간의 결과의 평등, 보상적 불평등을 옹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 비교

이처럼 최근 이루어진 양성평등 관련 사법판결과 입법정책의 논거를 보면 통치제도에 따라 강조된 평등의 관념과 기준이 상이하다. 비정치적인 사법기관의 판결은 기존 법제도에 의해 유지되는 불평등을 시정하려는 취지에서 주로 개인 간 평등에 초점을 두고 기회와 권리의 형식적 평등을 강조하였다. 사법제도의 논거는 블록대상평등이나 부문평등 혹은 보상적 불평등보다 개인대상단순평등이나 절대평등 혹은 절차의 기준에 기초한 평등을 옹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선거와 여론을 보다 의식하는 정파적인 입법과 행정기관의 정책은 사회와 문화 속에서 형성된 불평등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주로 집단 간 평등에 초점을 두고 블록대상평등, 보상적 불평등을 통한 전체평등 혹은 필요의 기준에 기초한 평등을 강

10) 최근 논의된 여성전용 광역선거구제는 여성 정치인에 대한 특별 취급을 통해 정치사회의 양성평등을 촉진하려는 급진적 아이디어였다. 전국을 일정 수의 권역으로 나누어 각 권역에서 1명씩 여성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자는 것인데 이에 대해 남성을 역차별 하는 것이고 지역구 민들에게 특정한 성을 선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반발로 결국 불발되었다.

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양성평등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지향하더라도 통치제도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평등의 관념과 기준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통치제도에 따라 옹호되는 평등의 관념과 기준이 상이한 것은 각 통치제도의 원리와 규범 및 유인체계가 다르기 때문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사법기관 내에서도 다수의견과 소수 혹은 별개의견을 보면 개별 행위자들의 이념적 성향 역시 중요한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사법기관의 판결행태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외국 연구에서 지적되는 사법기관 구성원들의 성향과 이념, 역할기대 등의 규범적 제약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Gibson, 2006).

IV. 문화편향과 평등의 기준

여기서는 양성평등 관련 정책쟁점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가 문화편향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분석하고 이를 통해 평등의 관념과 기준의 문화적 차이를 살펴본다.

1. 계층주의, 평등주의 및 개인주의

정책선호의 문화적 근원에 주목하는 망-집단(grid-group) 문화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이 지지하는 세계관과 추구하는 삶의 양식에 따라 그들이 옹호하는 평등의 관념과 기준이 다르다(Douglas, 1982; Thompson, Ellis & Wildavsky, 1990; Schwarz & Thompson, 1990; 박종민 2002).¹¹⁾ 첫째, 집단경계가 강하고 행위규범이 많은 계층주의 문화에 속한 사람들은 사회역할을 세분화하고 각자 자신에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 공동체 전체의 복지가 구현된다고 믿는다. 이 문화집단에서는 남자와 여자, 연장자와 연소자,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상급자와 하급자 등 공동체 구성원들이 다양한 기준에 의해 분류되고 각 범주에 대해 상이한 행위규범이 부과된다. 각 범주에 속한 개인들은 그 범주에 기대되는 행위규범에 따르도록

11) 4개 문화편향 가운데 평등관과 뚜렷하게 관련되는 계층주의, 평등주의 및 개인주의는 분석에 포함시키고 그렇지 않은 운명주의는 배제하였다.

한다. 범주에 따라 역할과 지위가 다른데 이는 전체의 조화를 위해 정당화된다. 따라서 계층주의자들의 경우 평등 주체의 범위가 배타적이다. 공동체 전체에 대한 강한 연대성을 강조하지만 그 구성원들은 범주에 따라 서로 동일하지 않다. 동등한 대우가 동일 범주에 속한 비슷한 사람들에게만 한정된다. 역할과 지위가 다른 범주에 속한 구성원들은 다르게 취급되며 범주 간의 차이가 정당화된다. 따라서 계층주의 문화에 속한 사람들은 양성평등과 관련해 주로 부문평등, 귀속이나 투자의 기준에 기초한 평등을 옹호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집단경계는 강하나 행위규범이 적은 평등주의 문화에 속한 사람들은 사회분류를 최소화하거나 분류를 하여도 범주 간의 차이가 고정되는 것에 반대한다. 공동체에 속한 모두가 동등하며 상급자와 하급자, 남자와 여자, 연장자와 연소자, 지도자와 추종자 간의 차이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구성원들 간에는 사회역할과 지위의 차이가 없고 설사 있다 해도 일시적이고 잠정적이다. 공동체에 대한 강한 연대성이 모든 구성원들의 행위를 규제할 뿐 범주별로 상이한 행위규범이 존재하지 않는다. 평등주의자들의 경우 평등 주체의 범위가 포괄적이고 평등의 영역은 광범하다. 공동체에 대한 강한 연대성으로 그에 속한 모두가 평등해야 한다고 본다.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차이를 없애는 것을 지향하기 때문에 결과의 평등을 중시한다. 따라서 평등주의 문화에 속한 사람들은 남녀를 구분하고 이들에게 다른 사회역할과 지위를 부여하거나 그에 따라 차등적으로 대우하는 것을 거부하며 양성평등을 위해 개인대상단순평등, 절대평등만이 아니라 보상적 불평등을 통한 전체평등도 옹호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집단경계가 약하고 행위규범이 적은 개인주의 문화에 속한 사람들은 평등주의자들처럼 사회분류와 행위규범을 최소화하려고 한다. 시장거래에서는 구매자와 판매자의 행위역할만이 유관하지 그들이 남자든 여자든, 연장자든 연소자든,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상관없다. 개인 간의 상호작용을 규제하는 최소한의 행위규범만이 존재한다. 그러나 공동체에 대한 강한 연대성이 없고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개인 간의 상호작용은 일시적이고 한정적이다. 따라서 개인주의자들의 경우 평등 주체의 범위는 포괄적이거나 평등의 영역은 협소하다. 개인의 특성과 자질의 차이를 무시하고 모두를 평등하게 취급하는 것에 반대한다. 이들이 대변하는 평등은 공정한 경쟁을 위한 기회의 평등이다. 모두가 동

일한 기회를 갖고 경쟁한다면 결과의 불평등은 수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주의 문화에 속한 사람들은 성을 구분하여 범주에 따라 특별취급을 하는 것에 대해 반대에 불록대상평등, 보상적 불평등을 통한 전체평등에 부정적이며 개인대상단순평등, 산출(기여) 혹은 절차의 기준에 기초한 평등을 옹호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어떤 문화편향을 지향하느냐에 따라 평등의 관념과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계층주의자들은 지위와 역할이 같으면 동등한 대우, 다르면 다른 대우를 해야 한다는 부문평등을 옹호할 가능성이 높다. 개인주의자들은 경쟁을 위한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지면 경쟁의 결과가 비록 차이가 나더라도 정당하다고 보며 따라서 개인대상단순평등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 평등주의자들은 공동체에 대한 강한 연대성이 유지되도록 전체평등을 추구하는 한도에서 개인대상단순평등, 절대평등만이 아니라 불록대상평등, 보상적 불평등을 옹호할 가능성이 높다.

2. 문화편향과 쟁점선호

문화편향에 따라 평등의 관념과 기준이 다른지 살펴보기 위해 문화편향과 양성평등 관련 정책쟁점에 대한 선호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¹²⁾ 분석에 포함된 2개 정책쟁점은 전술한 입법정책 및 사법판결에서 다룬 여성우대조치 및 호주제와 각각 관련된 것으로 여성고용승진할당제와 성(姓)선택주의이다(부성주의의 반대).¹³⁾ 여성고용승진할당제는 성 범주를 구분하고 범주 간 불평등을 보상불평등을 통해 시정하는 불록대상평등을 강조하는 것이고, 성(姓)선택주의는 성 범주를 구

12)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교육, 여성, 종교 관련 사회단체 활동가 345명을 표본으로 2005년 9-10월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서베이리서치센터가 실시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에 의해 수집된 것이다. 표본이 비확률 표집방식에 의해 선정되어 대표성을 담보하기 어렵지만 변수들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표본의 성별 구성은 남성 45%, 여성 55%이고 연령별 구성은 20대 23%, 30대 38%, 40대 24%, 50대 이상 15%이다.

13) 각 정책쟁점에 대한 선호를 측정하기 위해 다음의 찬성-반대 문항을 사용하였다: (1) 여성고용승진할당제(“모든 부문에서 채용과 승진 시 일정 비율을 여성에 할당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2) 성(姓)선택주의(“자녀의 성은 아버지의 성을 따르도록 하는 것보다 부부가 상의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각 문항의 응답범주는 1=매우 찬성, 2=찬성, 3=반대, 4=매우 반대이다.

분하지 않고 개인 간 평등을 주장하는 개인대상단순평등을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1>은 계층주의, 개인주의, 평등주의 각각의 문화편향¹⁴⁾과 전술한 2개 정책 쟁점에 대한 선호 간의 단순상관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첫째, 계층주의는 성(姓)선택주의와는 강한 부정적 관계가 있지만 여성고용승진할당제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 계층주의를 지지할수록 성 범주를 구분하지 않는 성(姓)선택주의에 대해서는 반대하나 성 범주를 구분하면서 범주 간 불평등을 보상하려는 여성고용승진할당제에 대해서는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는 것은 계층주의자들이 부문평등에는 긍정적이지만 블록대상평등이나 개인대상단순평등에는 긍정적이지 않음을 시사한다.

<표 1> 문화편향과 쟁점선호: 단순상관분석

	여성고용승진할당제	성(姓)선택주의
계층주의	-.103	-.400**
개인주의	-.216**	-.093
평등주의	.244**	.358**

기재된 수치는 피어슨 상관관계계수 *p<.05, **p<.01.

둘째, 개인주의는 여성고용승진할당제와는 부정적 관계가 있지만 성(姓)선택주의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 개인주의를 지지할수록 성 범주를 구분하면서 범주 간 불평등을 보상하려는 여성고용승진할당제에 대해서는 반대하나 성 범주를 구분하지 않는 성(姓)선택주의에 대해서는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는

14) 각 문화편향을 측정하기 위해 다음의 동의-부동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1) 계층주의(“학생은 선생님의 권위에 도전해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가 혼란스러운 것은 권위가 무시되기 때문이다.” “사회적 지위에 따라 예우가 달라져야 한다.”); (2) 평등주의(“우리 사회가 평등해지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 “대기업의 문제는 그들의 영향력이 너무 세다는 데 있다.” “우리 사회의 중요한 결정은 전문가들보다 일반 국민이 내려야 한다.”); (3) 개인주의(“돈을 벌어서 어떻게 쓰는가 하는 것은 남이 참견할 일이 아니다.” “삶의 경쟁에서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것은 당연하다.” “사람들이 가난한 이유는 충분히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다.”). 각 문항의 응답범주는 1=매우 그렇다, 2=그렇다, 3=아니다, 4=전혀 아니다 이다. 이들 문항 전체에 대한 베리맥스 회전 요인분석 결과 위의 구분대로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고 요인점수에 기초하여 계층주의(제1요인), 평등주의(제2요인), 개인주의(제3요인) 문화편향 척도를 구성하였다.

것은 개인주의자들이 보상적 불평등이나 블록대상평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개인대상단순평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임을 시사한다.

셋째, 평등주의는 여성고용승진할당제와 성(姓)선택주의 모두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 관계가 있다. 평등주의를 지지할수록 성 범주를 구분하면서 범주 간 불평등을 보상하려는 여성고용승진할당제뿐만 아니라 성 범주를 구분하지 않는 성(姓)선택주의에 대해 찬성하는 것은 평등주의자들이 전체평등을 확보하는 한도에서 쟁점에 따라 블록대상평등뿐만 아니라 개인대상단순평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임을 시사한다.

<표 2>의 다중회귀 분석결과는 정치이념, 성, 연령, 소득 등 주요 변수가 통제된 후에도 문화편향이 양성평등 관련 정책쟁점에 대한 선호에 여전히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¹⁵⁾ 첫째, 여성고용승진할당제에 대한 선호에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문화편향은 개인주의와 평등주의로 나타났다. 개인주의를 지지할수록 고용과 승진 시 일정 비율을 여성에 할당하는 제도에 반대하는 반면 평등주의를 지지할수록 이에 찬성하였다. 한편 계층주의는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주목할 것은 보수-진보 이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한편 여자가 남자보다 그리고 소득이 적을수록 여성고용승진할당제에 찬성하나 연령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다.

15) 이들에 대한 통제는 이들이 설명변수뿐만 아니라 종속변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특히 성 변수는 상이한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통제는 이해의 영향이 걸러진 후의 문화요인의 고유한 영향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한다. 연령과 교육 역시 양성평등 관련 쟁점선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통제 역시 필요하다. 그러나 여기서는 조사대상이 시민단체 활동가들이고 그들 대부분이 고학력자라 교육수준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비록 교육변수는 통계적으로 통제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통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인구사회학적 변수들 가운데서 성, 연령, 소득만을 통제하였는데 이들 변수들은 사회구조에서 개인들의 객관적 지위를 반영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사회구조적 요인이 양성평등 관련 쟁점선호에 주는 영향을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2> 문화편향과 쟁점선호: 회귀분석

	여성고용승진할당제	성(姓)선택주의
문화편향		
계층주의	.017(.055)	-.235(.060)**
개인주의	-.145(.049)**	-.074(.052)
평등주의	.135(.051)**	.267(.054)**
정치이념		
보수-진보	.021(.042)	.098(.045)*
인구사회학적 변수		
성	.589(.107)**	.568(.116)**
연령	.009(.005)	-.013(.005)*
소득	-.128(.042)**	.001(.045)
Adjusted R-square	.204	.386

보고된 수치는 비표준화회귀계수이고 괄호 안은 표준오차. *p<.05, **p<.01.
 주: 성(남자=1, 여자=2), 연령(20대=1, 30대=2, 40대=3, 50대+=4), 소득(200만원 미만=1, 200-300만원 미만=2, 300-400만원 미만=3, 400만원+=4), 보수-진보 (1-10).

둘째, 성(姓)선택주의에 대한 선호에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문화편향은 계층주의와 평등주의로 나타났다. 계층주의를 지지할수록 성(姓)선택주의에 반대하는 반면 평등주의를 지지할수록 이에 찬성하였다. 한편 개인주의는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여성고용승진할당제와는 달리 보수-진보 이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 강도는 문화편향보다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적일수록 그리고 여자가 남자보다, 연령이 낮을수록 성(姓)선택주의에 대해 찬성하나 소득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다.

전체적으로 양성평등 관련 2개 주요 정책쟁점에 대한 선호에 일관되게 영향을 주는 요인은 성을 제외하면 평등주의 문화편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을 포함 인구사회학적 변수가 통제된 후에도 보수-진보 정치이념과 달리 문화편향은 두드러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결과는 문화편향에 따라 쟁점선호에 주는 영향이 다른데 젠더 중립적인 개인대상단순평등을 반영하는 성(姓)선택주의에 대해서 계층주의는 부정적 영향을, 평등주의는 긍정적 영향을 주나 개인주의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편 젠더 특정한 블록중심평등을 반영하는 여성고용승진할당제에 대해서 개인주의는 부정적인 영

향을, 평등주의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나 계층주의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어떤 문화편향을 지향하느냐에 따라 평등의 관념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분석결과는 양성평등 관련 복잡한 정책논쟁이 진보-보수라는 단일차원의 정치이념보다 계층주의-개인주의-평등주의의 문화편향에 의해 더 잘 이해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V. 양성평등 정책논쟁의 역동성

사법판결과 입법정책이 옹호하는 평등의 기준이 다르고 문화편향에 따라 쟁점 선호가 다르다는 것은 양성평등 관련 정책과정이 역동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양성평등을 위한 사법판결과 입법정책의 논거가 되는 평등의 관념은 크게 둘로 구분될 수 있다. 하나는 성 범주를 구분하지 않고 남자든 여자든 모두를 평등하게 하는 개인대상단순평등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 범주를 구분하고 양 집단 간의 평등을 강조하는 블록대상평등이다. 그런데 이러한 평등의 관념과 기준은 문화편향에 따라 상이하게 옹호될 가능성이 있다. 개인주의자들은 개인대상단순평등에 초점을 두며 산출과 기여의 기준을 강조하고 기회의 평등을 옹호하나 평등주의자들은 블록대상평등에 초점을 두고 보상적 불평등을 통한 전체평등을 옹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계층주의자들은 귀속의 기준에 기초한 평등의 관념을 지지하고 동등한 대우가 법과 규칙에 따라 지위와 역할이 유사한 개인들에게만 한정되어야 한다는 부문평등을 옹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양성평등 정책 논쟁에서 다음과 같은 연합과 대립을 기대할 수 있다.

첫째, 호주제 폐지와 관련한 사법판결과 성(姓)선택주의 정책논쟁에서 계층주의자들과 평등주의자들이 정면 대립하고 개인주의자들이 평등주의자들에 동조할 가능성이 있다. 먼저 계층주의자들은 같은 지위에 있는 개인들은 동일한 대우를 해야 하지만 지위가 다르면 대우가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다. 여자와 남자의 사회적 지위가 다르고 따라서 그에 따라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는 것이다. 동일한 범주에 속한 개인들은 동일한 대우를 해야 하지만 다른 범주에 속한 개인들은 대우를 달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평등주의자들은 공동체 전체의 연대성을 강조하고 이러한 연대성을 위해 구성원들 간의 차이를 없애야 한다고 본다. 남자와 여자 등 사회범주화에 따른 차별대우를 반대하며 전체평등을 위해 보상적 불평등을 정당화한다. 따라서 평등주의자들은 성 범주를 구분하고 여성을 차별하는 호주제에 반대하고 성 범주를 구분하지 않는 성(姓)선택주의에 찬성한다.

한편, 개인주의자들은 평등주의자들처럼 전통적인 사회역할이나 지위에 따른 행위규범의 부과에 반대한다. 남자만이 호주가 된다거나 여자는 호주가 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다. 개인주의자들은 생득적인 차이에 따라 사회역할과 지위를 고정시키는 것에 반대한다. 따라서 호주제처럼 성 역할을 고정적으로 구분하고 그에 따라 차별대우를 하는 것에 반대한다. 이렇게 보면 호주제 폐지와 관련해 계층주의자들을 상대로 평등주의자들과 개인주의자들이 연합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여성고용승진할당제와 관련한 입법과 정책논쟁에서 개인주의자들이 평등주의자들과 대립하고 계층주의자가 평등주의자들에 동조할 가능성이 있다. 개인주의자들은 여성을 특별히 대우하거나 남성을 특별히 대우하는 것 모두 공정한 경쟁과 기회의 평등을 위협하는 것으로 반대한다. 개인 간의 경쟁을 강조하기 때문에 보상적 불평등을 통한 전체평등 혹은 블록대상평등에 기초한 입법과 정책에 반대한다. 따라서 여성고용승진할당제와 같이 성 범주를 구분하고 집단우대조치를 하는 것에 반대한다.

반면 평등주의자들은 블록 간 평등을 통해서든 혹은 개인 간 평등을 통해서든 공동체 구성원 간의 차이를 최소화하여 공동체의 연대성에 기여하는 모든 조치에 대해 호의적이다. 불평등은 구조적 및 역사적 차별의 결과이기 때문에 형식적 평등만으로 실질적 평등을 이룰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여성고용승진할당제와 같은 불평등한 보상조치를 통해서라도 양성집단의 균형을 맞추는 입법과 정책에 찬성한다.

한편, 계층주의자들의 입장은 모호하다. 이들은 생득적 차이를 없애는 결과의 평등이나 귀속적 차이를 무시한 권리의 평등 모두에 유보적이다. 여성과 남성의 사회역할과 지위는 차별이 아니라 차이를 반영하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는 입법과 정책은 기계적 평등이라고 본다. 그러나 성 범주를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유지하

는 것이라면 성 범주의 구분을 유지하는 입법과 정책에 대해 반대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여성고용승진할당제와 같은 정책논쟁에 있어 개인주의자들을 상대로 평등주의자들과 계층주의자들이 연합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VI. 맺음말

본 논문은 양성평등 관련 사법결정과 입법논쟁에서 사용되는 평등의 관념과 기준이 무엇이며 통치제도 및 문화편향에 따라 양성평등을 정당화하는 논거가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어떤 문화편향을 지지하느냐에 따라 양성평등 관련 정책쟁점에 대한 선호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법해석에 치중하는 비정치적인 사법기관은 개인대상단순평등, 절대평등 혹은 절차의 기준에 기초한 평등의 관념과 기준을 변호하는 반면, 선거를 의식하는 정치적인 입법 및 행정기관은 블록대상평등, 보상적 불평등을 통한 전체평등, 필요의 기준에 기초한 평등의 관념과 기준을 옹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통치제도에 내재된 원리와 규범 및 유인체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며 양성평등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지향하더라도 통치제도에 따라 다양한 평등의 관념과 기준이 선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분석결과는 양성평등 관련 정책쟁점에 대한 선호가 상이한 평등관을 옹호하는 문화편향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부문평등을 옹호하는 계층주의를 지지할수록 성(姓)선택주의에 반대하였고 전체평등을 추구하는 평등주의를 지지할수록 여성고용승진할당제와 성(姓)선택주의 모두에 찬성하였으며 개인대상단순평등을 강조하는 개인주의를 지지할수록 여성고용승진할당제에 반대하였다. 이는 개인대상단순평등을 지향하는 사법판결에 대해서 계층주의자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고 반면 블록대상평등을 지향하는 입법정책에 대해서 개인주의자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면서 양성평등 정책논쟁이 역동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전체적으로 분석결과는 평등의 관념이 다양하고 따라서 양성평등의 논거가 다차원적이며 통치제도와 문화편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양성평등 관련 정책논쟁의 성격을 이해하고 정책선호를 설명

하는데 문화적 접근의 중요성을 시사한다(양현아, 2002). 앞으로 주목되어야 할 한국 사회의 중요한 균열구조의 하나는 세계관과 문화가치의 경쟁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박종민, 2002). 지난 반세기 동안 급속한 사회경제적 근대화과 인구구성의 변화로 유교문화와 전통을 반영하는 계층주의 삶의 양식이 점차 약화되고 개인주의와 평등주의 삶의 양식이 상대적으로 강화되어 왔다. 이제는 계층주의, 개인주의, 평등주의 삶의 양식이 상이한 비율의 지지자들을 확보하면서 역동적으로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공문제에 대한 정책논쟁은 경제적 이익 갈등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하게 이들 삶의 양식 간의 대립과 연합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것이 바로 정책논쟁에 대한 좀 더 온전한 이해를 위해 문화적 접근에 주목해야 할 이유인 것이다. 양성평등 관련 정책논쟁도 예외는 아닌 것이다.

▣ 참고문헌

- 김경희. 2005. “여성정책 관점의 재구성을 위한 시론적 연구: 여성발전론과 성주류화 개념의 이해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1(2): 255-286.
- 박종민 (편). 2002. 《정책과 제도의 문화적 분석》 서울: 박영사.
- 양현아. 2002. “전통’과 ‘여성’의 만남: 호주제도 위헌소송에 관한 문화연구” 《법사학연구》 25: 105-128.
- 오병선. 2001. “남녀평등과 적극적 평등화조치” 《법철학연구》 4(1): 175-202.
- 전희권. 2002. “유교적 관점에서 바라본 성: 유교문화에서 남녀의 평등은 불가능한 것인가?” 《법철학연구》 5(2): 305-322.
- 조주현. 2003. “군가산점제 논쟁과 젠더 정치: 가능성 접근법의 관점에서” 《한국여성학》 19(1): 181-207.
- 조형 (편). 1996. 《양성평등과 한국 법체계》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편). 2002. 《한국의 여성정책》 서울: 미래인력연구원.
- Douglas, M. 1982. “Cultural Bias.” In M. Douglas (ed.), *In the Active Voice*.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 Gibson, J. 2006. “Judicial Institutions.” In R. Rhodes, S. Binder and B. Rockman, *The Oxford Handbook of Political Institutio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ausmann, R., Tyson, L. and Zahidi, S. Editors. 2006.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06*. World Economic Forum, Geneva, Switzerland.
- Hochschild, J. 1981. *What's Fair?*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Rae D. 1981. *Equalitie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Schwarz, M. and Thompson, M. 1990. *Divided We Stand: Redefining Politics, Technology and Social Choice*. Hemel Hempstead: Harvester-Wheatsheaf.
- Thompson, M., Ellis, R. and Wildavsky, A. 1990. *Cultural Theory*.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 Verba, S and Orren, G. 1985. *Elites and the Idea of Equalit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Walzer, M. 1983. *Spheres of Justice: A Defense of Pluralism and Equality*. New York: Basic Books.
- Young, I. 2001. "Equality of Whom? Social Groups and Judgements of Injustice." *Journal of Political Philosophy* 9(1): 1-18.